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 웹사이트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1회만 인증해도 다른 공공 웹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 체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내용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사항은 「전자정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 체계 근거 마련(안 제12조)

하나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다른 공공 웹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사이트 본인 확인 시 이전에 로그인한 다른 전자정부서비스에서 획득한 식별정보를 활용하는 근거와 신원확인을 위한 통합인증 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조 신설, 제36조의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있는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조문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인용하

는 법 조항을 ‘온라인 원격근무’ 내용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와 제3호”로 한다.

3. 해당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앞서 다른 전자정부서비스에서 본인을 확인하여 획득한 식별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제36조를 제3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2조제3항”으로 하며,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연계)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시스템 간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시스템 간의 연계에 필요한 기술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2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① (생략)	제12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해당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앞서 다른 전자정부서비스에서 본인을 확인하여 획득한 식별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및 이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	④ ----- ----- ----- ----- ----- ----- ----- 제2항제2호와 제3호----- ----- -----		

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연계)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시스템 간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시스템 간의 연계에 필요한 기술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의2(온라인 원격근무) ①
----- 법 제32조제3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717